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인공지능 등 디지털 관련 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 〉
■ 김상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000호)

2026. 3.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 명 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인공지능 등 디지털 관련 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김상훈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2025. 11. 7.
3. 회 부 일: 2025. 11. 1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개인정보 보호에 전문지식과 경력이 풍부한 사람을 국무총리, 국회 교섭단체 등이 제청 또는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생성형 AI를 포함한 신기술 발전 가속화에 대응하여 예방적 점검 기능 및 조사 역량 강화, 조사·처분 제도 정비 등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이 중요해짐.

이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위원에 인공지능 등 디지털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제2항).

현행	개정안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사람으로서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였던 사람 4. 개인정보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고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u><신 설></u> ③·④ (생략)	5.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③·④ (현행과 같음)

□ 현행법 제7조의21)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상임위원 2명(위원

1)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2(보호위원회의 구성 등) ① 보호위원회는 상임위원 2명(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보호위원회의 위원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경력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그 외 위원 중 2명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2명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 추천으로, 3명은 그 외의 교섭단체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공공기관 또는 단체(개인정보처리자로 구성된 단체를 포함한다)에 3년 이상 임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이들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사람으로서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였던 사람
4. 개인정보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고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④ 위원장, 부위원장, 제7조의13에 따른 사무처의 장은 「정부조직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

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자격요건으로 ①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② 판사·검사·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③ 공공기관 또는 단체(개인정보처리자로 구성된 단체를 포함한다)에 3년 이상 임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이들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사람으로서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였던 사람, ④ 개인정보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고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²⁾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일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최근 인공지능(AI)기술은 사회 제반 영역에서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고, 생성형 AI의 학습데이터 확보 등 AI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데이터의 활용 필요성이 커지는 한편, 개인정보의 보호 강화 필요성 또한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에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을 임명·위촉하도록 함으로써, AI기술 발전과 이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분야 이슈에 시의성 있게 대응하

2)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려는 것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다만, 개정안(제7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르면, 위원장이 제청하는 2명 중 1명에 대해서는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 관련 분야 전문가를 의무적으로 제청하여야 하는데, 보안, 소비자 보호, 분쟁 조정, 국제협력 분야 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다양한 분야 중 디지털 기술 관련 분야 전문가에 대해서만 위원 위촉을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타 분야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논의될 필요가 있어 보임.

현행법은 개인정보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하기 위해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나 대학 교수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이를 통해 디지털 기술 관련 전문가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는 구조라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현행법상 개인정보 관련 전문가의 경우 자격요건으로 대학의 ‘부교수 이상으로 5년’을 요구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조교수 이상으로 5년’을 요구하고 있음. 이는 신기술 분야 전문성, 최신성을 반영하여 자격요건을 다소 완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타 분야 전문가로서 교수 자격으로 위촉되는 경우와 개정안에 따라 디지털 기술 관련 전문가로 위촉되는 경우의 자격요건을 다르게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타 자격요건과의 형평성,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타 합의제 행정기관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참고로 공정거래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은 위원의 자격요건으로 ‘부교수’ 이상으로 일정 기간 재직한 경력을 요구하고 있음³⁾.

□ 한편, 개정안은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일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음. 이는 재직 중인 사람과 재직하였던 사람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표현으로 보이나, 현행법상 다른 요건의 표현(“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과 차이가 있으므로 명확성 제고를 위해 일관된 표현으로 정리하는 것이 체계상 적절해 보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디지털 기술 관련 전문가를 자격 요건에 추가할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해당 전문가 위촉을 의무화 및 자격요건 등에 대해서는 타 자격요건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104

3) [참고자료 2] 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입법례

【 참고자료 1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현황(2026. 3. 6. 기준)

구분	성명 (위촉일/만료일)	주요경력	추천경로
위원장	송정희 (2025. 10. 7. ~ 2028. 10. 6.)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 성균관대 인공지능융합원 산학교수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 -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국무총리
부위원장	이정렬 (2025. 11. 17. ~ 2028. 11. 16.)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장 -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기획관 -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장	국무총리
위원	김진환 (2023. 9. 21. ~ 2026. 9. 20.)	- 법률사무소 웨일앤썬 변호사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문 변호사 - 서울지방법원 본원 및 남부지원 판사	위원장
	김휘강 (2025. 3. 14. ~ 2028. 3. 13.)	-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에이아이스페라 공동창업자 - 엔씨소프트 실장 - 에이쓰리시큐리티 창업자	위원장
	박상희 (2023. 9. 21. ~ 2026. 9. 20.)	- 고려대 정보보호연구원 연구위원 -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장 -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관	여당 (민주당)
	윤영미 (2023. 9. 21. ~ 2026. 9. 20.)	(사)소비자와함께 공동대표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 위원 - YTN 시청자위원회 부위원장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여당 (민주당)
	이문한 (2024. 3. 11. ~ 2027. 3. 10.)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법무연수원 부원장 -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지청장 -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여당 (민주당)
	김일환 (2023. 9. 21. ~ 2026. 9. 20.)	-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 舊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야당 (국민의힘)
	김진욱 (2023. 9. 21. ~ 2026. 9. 20.)	-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 중앙선관위 인터넷선거보도심의 위원 -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 조정 위원 - 한국정보보호학회 법무이사	야당 (국민의힘)

【참고자료 2】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입법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임명 등) ① 위원장 및 위원은 방송 및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1. 방송학·언론학·전자공학·통신공학·법률학·경제학·경영학·행정학, 그 밖에 방송·언론 및 정보통신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방송·언론 또는 정보통신, 그 밖의 관련 분야에 관한 경험이 있는 2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방송·언론 또는 정보통신 관련 단체나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의 직에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방송·언론 또는 정보통신 분야의 이용자 보호활동에 1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제1호, 제3호, 제4호 및 공무원 경력 등을 합산하여 15년 이상이 되는 사람
- ② 위원 7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5명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제1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국회는 위원을 추천할 때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2명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가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3명을 추천한다.
- ③ 부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정하되,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7조(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4명은 비상임위원으로 한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또는 소비자분야에 경험이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밖의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1. 2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5년 이상 있었던 사람
 3. 법률·경제·경영 또는 소비자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었던 사람
 4. 기업경영 및 소비자보호활동에 1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그 밖의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보(補)한다.
- ④ 위원장·부위원장 및 제70조에 따른 사무처의 장은 「정부조직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부위원장 3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부위원장은 각각 고충민원, 부패방지 업무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업무로 분장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다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 1. 25.>

② 위원장, 부위원장과 위원은 고충민원과 부패방지에 관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8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3.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5. 제33조제1항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그 직에 4년 이상 있었던 자

6.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상임이 아닌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상임이 아닌 위원 중 3명은 국회가, 3명은 대법원장이 각각 추천하는 자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2. 2. 17.>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정무직으로 보하고,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4. 5. 28.>

⑤ 위원이 결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